

안전은 권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 주요 내용 설명 자료



# 개정 배경 및 취지





- **산업재해 감소 추세에도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
  - **2017년** 964명 사망, 경제적 손실액 약 22조원
  - **2018년 9월 기준 730명 사망**[전년 동기 대비 25명(3.3%) 감소]
  - ※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수는 일본 및 독일 등 선진국 보다 2~3배 높은 수준
-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사고가 반복됨**
  -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의 핵심과제로 추진

핵심과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보장
목 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li> <li>• 건설업 등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li> <li>• 현장관리·감독 시스템의 체계화</li> <li>•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 중시 문화 확산</li> </ul>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개정안에 반영**

- 위험노출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의 보호대상 확대
-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위험 주체별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산안법 실효성 제고

**법 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을 정리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임****공포일**

-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

**시행일**

-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조문수**

- 현행 본칙·부칙 (72개조·5개조) → □ □ (175개조·21개조)



1 법의 보호 대상 확대 및 적용범위 명확화

2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3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4 작업중지 강화

5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7 그외 유해·위험 방지 조치 등

8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1

# 법의 보호대상 확대 및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1조(법의 목적)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제2조(정의) 「산업재해」 정의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양한 고용 형태에 사각지대 발생
- (□ □) (□ 1□) 법의 목적에서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 (□ 2□ □ 1□) 산업재해의 정의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77조(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고용형태의 여부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 □)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 정의**
  - \* 3요건 모두 충족 : ① 종속성이 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인 노무 제공,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음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규정 마련
  - \*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3□) 특수형태근로종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배달 앱 등을 통한 노무 제공이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나 한 사업주에게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는 별개로 배달 종사자에 대한 보호 확대 필요
- (□ □)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으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에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마련

\* 중개하는 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3조(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 범위의 원칙을 “사업”으로 통일</li> <li>• “사업의 규모” → “상시 근로자수 및 건설공사 금액”</li> </ul>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각 조문에서 사용하는 “사업”이란 용어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약칭과 본래적 의미의 “사업”으로 혼용되어 사용됨에 따라 법 적용 시 혼란 초래

- \* 사업 :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으로 경영이나 비즈니스, 즉 「상법」상의 상행위와 유사한 개념
- \* 사업장 :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곳

- (□ □) 약칭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 “사업”으로 통일
- \* 각 조문에서 “사업”이란 용어가 “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사업장”이 포함된 용어인지를 명확히 구분함
- “사업의 규모 ” → ‘상시근로자 수 및 건설공사 금액’으로 구체화

2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현행법은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이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한 건강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하여 도급 금지 필요
- (□□) (1□) **현행 인가대상 작업\*의 사내 도급 전면 금지**
  - \* 현행법 상 인가대상 작업 : ① 도급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③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
- (2□)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의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
  - \* 일시·간헐적 작업 : ① 작업 수요가 주기적이지 못하거나 예측 불가능하여 상시 인원을 두기 어려운 작업 ② 전문인력 채용에 시간이 소요되어 작업시기를 놓칠 경우 근로자의 위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작업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3~7항) 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함
- 승인기간은 3년이며, 연장 및 변경 시에도 승인 필요
- \* 사업주가 위반하여 도급하는 경우 : 10억 원 이하 과징금



## 참고 : 기존 인가의 효력(부칙 제10조)



현행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법 시행일 2020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개정법 공포일 2019.1.15.)**

- ① 종전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 시행일 이후 **남은 기간** 동안 효력 유지
- ② 종전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 시행일 이후 3년까지 해당 인가 기간 유지

(예) 2018.1.16. 도급 인가(3년) : 시행일 이후 해당 1년 유지(2021.1.15.)

2018.1.16. 도급 인가(제한 없음) : 시행일 이후 3년 유지(2023.1.15.)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8조(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현행법은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 만을 정하여 안전보건 평가 후 “인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보건조치의 기술적 사항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수급인 노동자의 실질적 안전보건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인가’는 소정의 법적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청의 보충적 법률행위이므로 실제로는 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음

- (□□) 유해·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이나 피부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안전보건평가를 받아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주가 위반하여 도급하는 경우 : 10억 원 이하 과징금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인해 도급인의 정상적인 안전보건 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의사 소통이 어려움
- (□ □) 도급 승인 대상작업으로서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금지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도급의 목적이 **비용 절감, 위험 외주화 등으로 일반화**되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는 경우 그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문제 발생
- (□ □)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규정마련

3

#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1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기업의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은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과 경영 정책에 크게 의존하므로 **회사의 대표 이사에게 안전보건의 직접적인 의무 부담 필요**
    - \* 현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등이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되고, 대표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 (1□)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 (2□) 대표이사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
    - (3□) 계획 수립 시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미 보고 또는 미승인 시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현행법\*은 도급인의 범위와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사안마다 논란 발생
  - 산업재해가 발생 후 사후적으로 위험 장소를 추가하는 입법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 제기
- \* 현행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 :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② '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 도급'으로 한정
-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발생 장소의 작업으로 한정
- (□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작업장소나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 장소 및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 부과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담 범위를
  - 관계수급인 노동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 ②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 예정)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
- 다만, 불법파견 등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참고 : 용어의 정의(제2조)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지정 범위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기존의 제29조)와 동일하게 확대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 규정\*이 여러 조항에 산재된 것을 정비**  
\*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
- (□ □) **수급인과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구분하여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점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휴게시설 및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 도급인의 조치의무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5항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법의 위임 없이 규칙(제30조의4)에서 규정한 내용을 법으로 상향시키고, 도급인의 형식적인 정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 (1□) **현행 규칙에 규정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해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법으로 상향 입법**
  - \* 정보제공 의무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3□)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도급인의 확인 의무** 규정
- (4□)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 미제공 시 도급 작업 개시 연기 및 계약의 지체 책임 면제**를 명시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6항 및 제7항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 문제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과 함께 **수급인에 대한 미 시정조치로 인한 처벌은 이중제재의 논란**이 있음
- (□ □) 사내 도급시의 시정조치와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의 **사내·외 도급시의 시정조치를 구분**하여 규정
  - 도급인의 시정조치 명령 대상을 **관계수급인으로 명확히 하고**, 관계수급인 노동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
  - 작업장이 도급인 사업장인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 조치 의무를 삭제하고, 수급인에게 **시정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수급인 또는 수급인 노동자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가맹점 사업자 및 근로자의 효과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행 법에는 **가맹본부의 재해예방 의무에 관한 규정 미비**
- (□ □)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 ①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 마련·시행

②가맹본부가 공급·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 가맹본부가 위반 경우 :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참고 : 프랜차이즈업 재해현황

【통계청 서비스부문 프랜차이즈 조사 ('12~'14)】

연도	가맹점(천개)	종사자수 (천명)	가맹점당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이익 (조원)	가맹점당 영업이익(억 원)
				(조원)	매출액(억 원)		
2014	167	577	3.46	43.0	2.6	4.5	2,730
2013	151	511	3.38	37.6	2.5	4.0	2,625
2012	147	486	3.30	35.4	2.4	3.7	2,520

【사업장 규모별 재해현황('17.10.)】

내용	규모	계	50인 미만					1,000인 이상	
			5인 ↓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재해율(%)		0.4	0.87	0.55	0.26	0.18	0.15	0.15	0.14
사고사망 만인율(%)		0.44	0.85	0.57	0.32	0.28	0.23	0.24	0.1

4

# 작업중지 강화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6조(작업중지 등) 제2항, 제3항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현행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하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 불이익 조치 우려로 인해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곤란함
- (□□) (1□~3□) **별도 조문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를 명시하여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함**
  -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26조(작업중지 등) 제1항 <신 설> 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제3항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1항 제54조 제2항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치의 하나인 **작업중지**”는 그 목적이 다르나, 구분 없이 하나의 조항(현행법 제26조)에서 규정
- (□ □)(□ 51□, □ 54□ 1□)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로 조항을 구분**
- (□ 54□ 2□) 일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와 구분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의무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 사항에서 규정**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51조(감독상의조치) 제7항 제26조(작업중지 등) 제4항, 제5항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제56조(중대재해 원인 조사 등)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만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한 작업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해제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
- (□ □) (□ 55□ 1□) 고용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① 해당 작업, ②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산재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작업중지 명령 가능(즉시강제)



## 개정 배경 및 개정 내용

- (□ 55 □ 2 □) 고용부장관은 건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 작업중지 가능
- (□ 55 □ 3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작업중지 해제 절차규정 마련
- (□ 56 □ 1 □, 2 □) 고용부장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는 작업중지 요건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함
- (□ 56 □ 3 □)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뿐만 아니라 원인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 금지
  - \* 사업주의 작업중지 명령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

#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보건조치가 이행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 전 과정에 큰 영향력이 있는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필요
- (□ □)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발주자가 공사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의무 규정
  - (계획) 건설공사 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유해·위험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작성
  - (설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도서(설계안전보건대장)를 설계자에게 작성토록 하여, 설계자의 최종 설계도서 납품 시 이를 확인
  - (시공)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이행여부 확인

\*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시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나 설치·해체 업체의 사업주는 대부분 영세소규모로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부터 전 과정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 필요
- (□ □)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해체작업에 대한 직접 계약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대부분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매 작업 시 필요한 노동자를 모집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실정으로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다수의 산업재해 발생
-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 사업주는 고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자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업주가 미등록자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6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MSDS 작성자가 '양도·제공자'로 규정되어 있어,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취급하나 양도·제공은 하지 않는 경우에는 MSDS 작성 의무가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
  - MSDS에 기재되는 구성성분이 국제기준과 달리 유해·위험성 미분류 물질까지 포함하여 수입 화학제품의 경우, MSDS에 유해·위험성 미분류 물질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 확보 어려움
  - 현행법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므로 정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현황이 곤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시 정부의 예측·대응 곤란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1□) MSDS 작성자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
  - MSDS 작성대상 **약칭인 '대상화학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
  - (1□ 1□) MSDS 기재내용 중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변경하여 제품의 구성성분 명칭과 혼동하지 않도록 함**
  - (1□ 2□) MSDS에 기재하는 구성성분을 국제기준과 같이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함
  - (2□)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 뿐만 아니라 고용부장관에게도 MSDS 제출**
    -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MSDS와 함께 제출
    - (2□) **다음의 경우 별도 제출 면제**
      - ① 현행과 같이 MSDS에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기재한 경우
      - ② 수입자가 국외 제조자로부터 제출대상 물질이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 MSDS 또는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 자료 미제출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정 전 (현 행)	개정 후	비 고
작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위험한 화학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li> <li>약칭 : 대상화학물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li> <li>약칭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 대상은 동일</li> <li>명칭만 변경</li> </ul>
작성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도·제공 없이 제조·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li> </ul>
기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화학물질의 명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 대상은 동일하나, 이를 명확히 함</li> <li>↳(예시) 구성 성분인 "에틸알코올" 이 아닌 제품명인 "크리네타놀"을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위험성 물질만을 기재</li> <li>↳(예시) "에틸알코올 92%"</li> </ul>
제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부장관에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MSDS를 제출 받아 관리</li> </ul>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MSDS의 작성 대상자가 **제조·수입자로 변경**함에 따라 MSDS 작성자와 제공자가 달라짐
- (□ □) (1 □) MSDS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 MSDS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하도록 함
- (1 □ ~ 3 □) MSDS의 변경 **주체를 제조·수입한 자로 명확히** 하고, 변경된 MSDS를 제조·수입자(**제조·수입자로부터 양도·제공받아 다시 제공하는 자 포함**)가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 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 미제공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변경된 MSDS를 양도·제공 받은 자에게 미제공 시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화학제품 양도·제공자가 영업비밀 여부를 자의적 판단함에 따라 '영업비밀' 적용 **비율증가('09년:45.5%→'14년:67.4%)**
  - 직업병 발생 원인 규명 등 공적 업무 수행기관에 정보 제공 요구권 필요
- (□ □)(1□, 2□) MSDS상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비공개 시 **"고용부장관 사전승인"**
  - \* **비공개 심사 업무는 안전보건공단에 위탁**
  -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유해성·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는 **대체 명칭 및 대체 함유량 기재**
    - \*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 자료로 작성한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4□, 5□) 승인의 유효 기간은 5년, 승인 유효 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 승인
- (6□, 7□) 비공개 정보 승인 결과 이의 신청 가능, 이의 신청 시 고용부장은 승인 또는 연장 승인 여부 결정
- (8□)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취소
- (10□)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권자에 역학조사 실시기관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추가
  - \*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 명칭 및 함유량 정보 미제공 시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113조(국외 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국외 제조사가 제품 복제 등을 우려하여 국내 수입업체에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수입 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사가 국내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 할 수 있도록 규정
- (□ □) (1□)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MSDS, 구성성분 정보, 비공개 정보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 가능
  - \* 국외제조자가 1항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2□) 국외 제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고용부장관에게 MSDS 자료 제출 시에는 그 MSDS 자료를 수입자에게도 제공해야 함

7

# 그 외 유해·위험 방지 조치 등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현행 규정의 모호한 의미 및 근로자 참여를 법에서 명확히 규정
- (□ □) 위험 요인의 사전발굴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재해예방 조치 조문 앞에 배치하여 조문의 순서를 조정함
- (1 □) 기존의 유해·유험 요인을 찾아 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 는 것으로 내용을 구체화
- (2 □)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43조의2(역학 조사)	제141조(역학 조사)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한 규정이 있으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위임 규정은 없음
- (□□) (1□)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참석할 수 있는 역학조사의 **종류** 등에 관한 위임 근거 신설
  - (3□, 4□) 장관이 참석을 허용한 사람의 참석을 거부·방해한 경우 및 참석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처벌 규정 신설
    - \* 비밀을 누설한 참석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또는 참석이 허용된 자의 역학 조사 참석을 거부·방해한 자 : 1천500만 원 이하 과태료

8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66조의2(벌칙)	제167조(벌칙)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음
- (□ □)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66조의2(벌칙), 제67조의2(벌칙)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 됨에 따라 **위반 시 제재도 강화**
- (□ □) (169□)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167□)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제71조(양벌 규정)	제173조(양벌 규정)



## 개정 이유 및 개정 내용

- (□ □) 현행 양벌 규정은 기업 규모, 개인, 법인의 구별 없이 그 처벌수준이 동일하고,
  - 법을 위반한 행위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도 같아 법인에 선고되는 벌금 액이 **규모가 큰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소액으로 범죄 억제 효과 미미**
- (□ □)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양벌 규정을 이원화
  - 법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 개정 조항

현 행	개 정
<신 설>	제174조(형벌과 수강 명령 등의 병과)



## 개정 배경 및 개정 내용

- (□□)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제재적 의미보다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실형이나 벌금 선고와 별도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토록 수강명령 제도 도입
- (□□) (수강명령 병과) 법원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 판결(선고 유예 제외)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수강명령 내용)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감사합니다

